

문 의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	과 장 박호형 042-481-5168 사무관 안광열 042-481-5154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2018년 5월 2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5월 27일(일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

중소·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IP 금융모델, 특허공제제도 추진 박차

- 특허청, '19년부터 특허공제사업 본격 운영 -

- ☐ 특허청(청장 성윤모)은 내년부터 중소·벤처기업 중심의 '특허공제제도*' 운영을 통해 민간 중심의 IP 금융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·완화하기 위해 기업 간 상호부조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

- ☐ 특허공제는 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하여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,

○ 공제가입자는 해외출원, 국내외 심판·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을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.

※ 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납입하는 소액의 월별부금은 일정 비율로 적립되며,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지급된다.

- ☐ 그동안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내기업의 수출 및 신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.

○ 특히,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비용 부담*,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.

* 소송비용/손해배상금 : (국내) 2억원 / 5.9천만원, (미국) 200만달러 / 200만달러

- 또한,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**긴급한 수요에 대한 즉시 지원이 곤란**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.
- 특허청은 특허공제 도입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을 ‘**先대여 後분할상환**’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,
 -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불충분*할 때 대안으로서 **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**에 기여하고,
 - * '17년 우리청 예산에서 중소·중견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550억원 규모, 수혜기업은 3,100개 수준으로 이는 48만개 전체 중소·중견기업의 0.6%에 불과
 - 정책수단을 다양화하여 중소기업에게 **선택의 폭을 확대**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일('18.5.29)에 맞추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, 올해 말까지 **특허공제 추진단**을 중심으로 **예산·법령·운영조직 등 사업 시행 기반**을 마련할 계획이다.
 - 자금 대여 이외에도 IP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-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·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**신속하게 보호하고 사업화가 되도록**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면서 “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·벤처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『**지식재산 지원 플랫폼**』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※ 참고: 특허공제 사업 개요

□ 사업 개요

- 특허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매월 소액의 공제부금을 납입하고, 해외 출원을 하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, 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활용하고 대여받은 자금은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

□ 추진체계

-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을 ‘先대여 後분할상환’ 방식으로 지원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·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 제공
 - [공제부금 적립] 가입자가 납입하는 소액의 월별부금은 일정 비율로 적립되며,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지급
 - [先대여 後상환] 가입자는 해외출원, 국내외 심판·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을 先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

□ 공제금 납입 및 대여

- (공제부금 납입) 월별로 납입하는 부금은 가입자의 업종·규모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차등화* 하여 편성
 - * 예시) 공제부금 : 30만원, 50만원, 80만원,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
- (지식재산 비용 대여) 가입자는 적립된 부금의 5배 한도 내에서 필요 비용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활용하고 5년간 분할하여 상환
- (의무 납입기간) 공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입자는 의무 적립기간(1년) 동안 부금을 납입한 이후부터 대여 가능
 - * 노란우산공제 등 유사 공제사업도 의무 납입기간 운용
- (공제약정 갱신) 가입자의 적립 부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, 최초 약정을 갱신하여 납입부금을 최저한도(30만원)로 변경 가능

□ 위탁기관, 운영조직 등

- (위탁기관) 기관 신인도 · 공제운영 노하우 · 자산관리 전문성 등 요구되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
- (운영조직) 위탁기관 내에 특허공제본부를 신설하고, 그 하부에 특허공제기획부, 자산운용부, 채권관리부, 회원지원부 설치
- (심의기구) 자산운용, 리스크 관리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특허청 · 위탁기관 ·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비상설 심의기구 운영

□ 법령 및 규정

- (발명진흥법) 공제사업의 실시근거 규정으로서 '18.5.29일자 시행
- (시행령)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
 - * 부처의견 문의('18.2) → 입법예고('18.3) → 규제심사·법제처심사('18.4) → 차관회의('18.5)
- (운영규정) 발명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세부 운영 방법 및 절차는 특허청장 고시를 제정하여 반영('18.7~9월)

□ 추진 일정

- '19년 특허공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특허공제 추진단* 을 중심으로 예산 · 법령 · 운영조직 등 사업 시행 기반 마련
 - * 우리청, 금융전문가, 위탁기관 등으로 구성하여 사업 인프라 구축

1 예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■ 기획재정부 대응			
■ 국회(산자위·예결위) 대응			

2 법령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■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			
■ 특허공제 운영요령 제정			

3 운영조직 · 인력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■ 중기중앙회 조직규정 개정			
■ 중기중앙회 특허공제본부 신설, 심의기구 구성			
■ 신규 직원 채용			